

# 이주노동자의 주거와 생활 실태 및 정책 과제<sup>1)</sup>

The Housing and Living Conditions of Immigrant Worker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이주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이 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 및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의 경우 회사(고용주)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절반이었으며, 기숙사의 주거 형태를 설문한 결과를 보면 비거주용 건물 내 공간, 임시적인 가건물, 무허가 불량주택, 비정형 주거 형태인 컨테이너 등 열악한 주거 형태의 비율이 40.5%에 달했다. 또한 '방문취업자(H2) 및 중국 출신 재외동포(F4)' 경우에도 월세 부담으로 월세액이 낮은 주거공간을 찾다 보니, 주거환경이 자연스럽게 취약한 상황으로 몰리게 됐다. 체류자격별로 한국어 구사 능력을 비교해 보면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의 경우 방문취업자(H2)와 재외동포(F4)에 비해 한국어 구사 능력 수준이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부당한 처우를 당하더라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이들은 한국인의 비우호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감내하며 생활하고 있다. 한국인의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인 인식은 그 정도는 다르지만 당사자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적인 언론매체 등 단편적인 시각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직장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 대한 점검과 최소한의 수준은 보장될 수 있는 규제와 제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이 글은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김기태 외,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부 이주노동자 연구 중 제7장 '제4절 이주노동자의 주거 및 생활 실태'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함.

## 1. 들어가며

한파경보가 내려졌던 지난 2020년 12월 20일, 경기도 포천시 농가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이주 노동자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윤지원, 2020. 12. 23.). 그는 비닐하우스에서 숙박을 하며 농가의 일을 돕던 이주노동자였다. 비닐하우스는 농가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숙식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기숙사로 꼽힌다.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별 분포를 보면 2020년 6월 기준, 제조업 다음으로 농축산업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에서(김기태 외, 2020, p. 28) 비전문취업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실태를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숙박을 위해 마련되는 공간이 아니므로 숙박 기준에 맞지 않게 만들어지는 비닐하우스 등의 가건물은 여름철에는 수해 피해, 겨울철에는 난방에 대한 문제 등에 노출되기 쉽다.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2017년 부산에서는 컨테이너 숙소의 화재로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윤성효, 2017. 12. 17.), 이주노동자 주거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이 전인 2017년 9월 27일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노력들이 있었다. 당시 이주노동자의 30%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 가건물을 기숙사로 제공받고 있으며, 화장실 등 필수적인 위생 설비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아 열악한 주거 실태와 함

께 더불어 건강까지 위협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2018년 유엔특보는 주거 지원을 위한 한국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국제인권규약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참여연대, 2018). 특히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생활, 사업장 내에 마련된 이주노동자의 기숙사 등의 주거환경을 직접 관찰하며, 이러한 주거 형태가 대부분 위생적인 개별 화장실도 없는 실정임을 확인하였다. 또 이는 국제인권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도 달하지 못할뿐더러 안정성 또한 취약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주거권은 먹고 입는 것과 더불어 인권의 첫 단계이다. 즉, 적절한 주거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나 기본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은 개선이 되었을까. 앞서 언급한 최근 사건만 보아도 크게 개선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주와 인권연구소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보다 낮은’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최저보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이주와 인권연구소, 2019). 더욱이 최근 이주노동자의 삶은 코로나19로 더욱 열악해지는 실정이다. 여전히 그들은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며 감염병 확산으로 제대로 된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 등 주거권, 의료권, 언어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이전의 노력들이 실제 이주노동자의 주거생활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으며, 그 실태는 어떠한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은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였고,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의 생활은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이 포함된다. 업무 외 활동은 보통 주거공간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직장 내의 생활은 노동권에 방점을 두고 살펴볼 수 있다면, 일상생활을 포함한 일반적인 생활은 주거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주거환경은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또한 이들을 위한 지원 혹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경험과 그들이 바라보는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을 이해해야 한다. 이에 이주노동자의 한국에서의 생활경험, 그들이 인식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0년에 실시한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 및 실태,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의사소통, 차별경험, 한국인 인식에 대한 평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조사는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 중 과반수가 집중된 제조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출신 국가 상위 7개국을 선정했다.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의 경우, 대다수가 중국 출신인 점을 고려해서 중국 출신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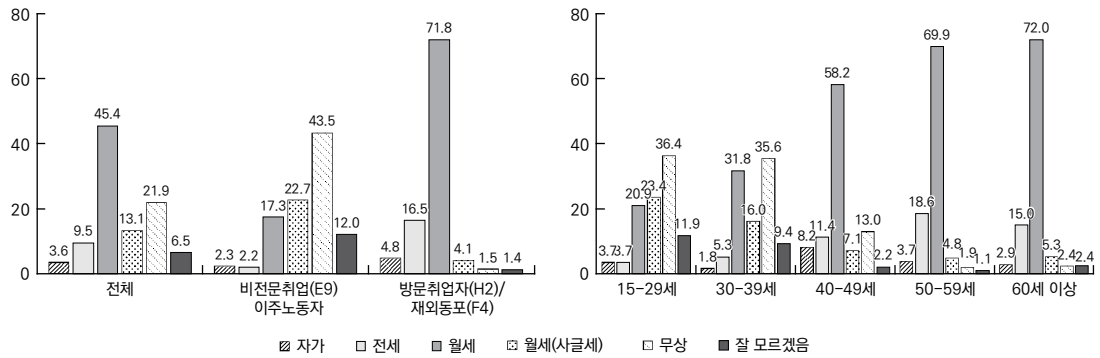
## 2. 주거환경 및 실태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

해 먼저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집의 점유 형태를 살펴보았다. 조사 대상인 전체 이주노동자의 집의 점유 형태는 월세가 45.4%로, 사글세를 포함하면 60% 정도가 월세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의 경우 직장 내 기숙사 형태와 같은 무상 주거의 비율이 43.5%로 가장 많았으며, 월세(사글세 포함) 형태가 40% 정도를 차지했다. 방문취업자(H2) 및 재외동포(F4)의 경우에는 75%가 월세(사글세 포함)의 형태로 생활하고 있었다. 비전문취업 이주노동자의 47%가 15~29세 연령층으로 이들은 직장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등 무상 제공의 비율이 36.4%로 가장 많았으며, 방문취업자 및 재외동포에 몰려 있는 4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월세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체류자격의 영향으로 집의 점유 형태는 연령별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회사 기숙사의 주거환경의 열악함이다. 이주와 인권 연구소의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55.4%가 공장 작업장 내에 주거공간이 있거나 가건물을 기숙사로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이주와 인권연구소, 2019). 이 가운데 17.1%는 컨테이너 등 가건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의 사정은 더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본적인 냉난방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비닐하우스에서 6~8명이 한 공간에 거주하는데도, 우리 조사에서 표현한 ‘무상’의 의미가 무색하게, 고용주는 최저임금 상승의 이유로 주거비 명목의 금액을 제하고 월급을 주는 경우

그림 1.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집의 점유 형태

(단위: %)



자료: 김기태 외. (2020).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이주노동자 연구. p. 321. [그림 7-4-12], p. 322. [그림 7-4-13].

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임동우, 김민정, 2020. 9. 22.). 무상 제공 기숙사의 열악한 환경에 20대 초반의 청년들도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 이주노동자의 주거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 및 규제 등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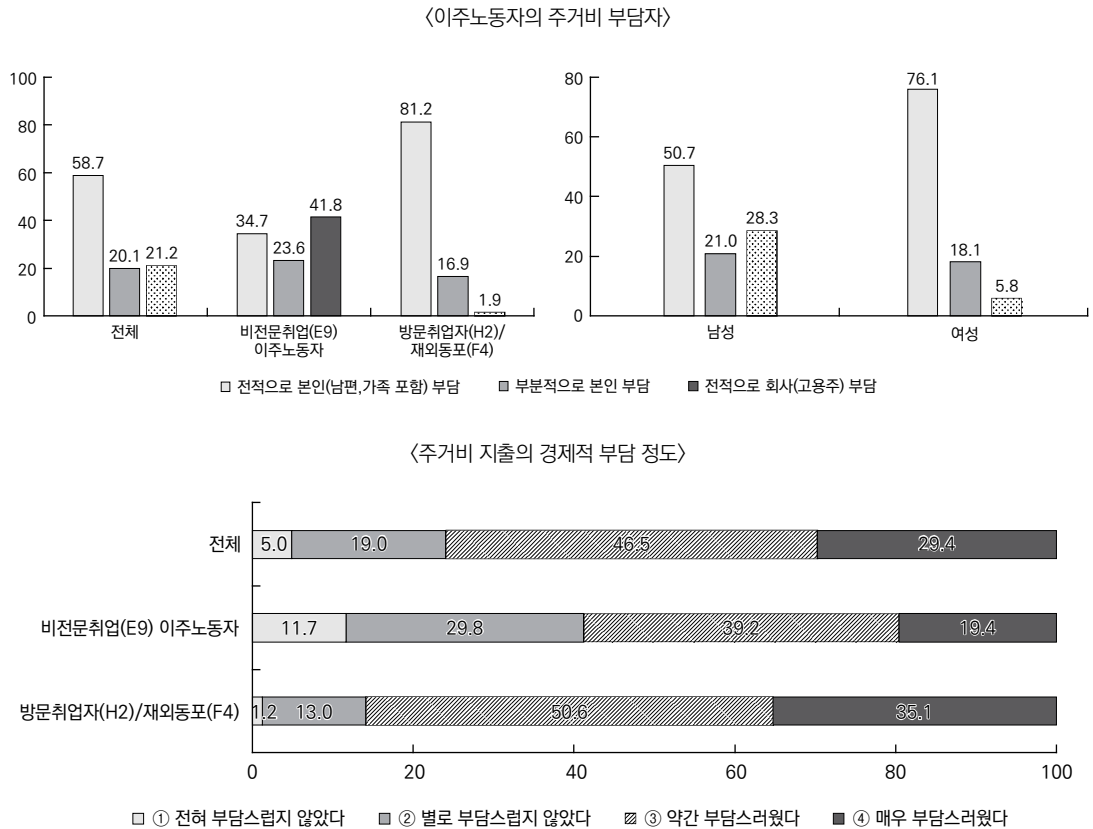
주거비 부담자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한다는 비율이 5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분 본인 부담이 20.1%, 회사(고용주) 부담이 21.2%로 조사되었다. 앞의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비전문취업 이주노동자의 경우 직장 내 기숙사 생활 등으로 회사(고용주)의 부담 비율이 41.8%로 높았으며, 본인이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부담하는 비율은 각각 34.7%, 23.6%였다.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 본인 부담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남성의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거주지에 생활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주거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 외국인근로자의 30%가 매우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으며, 약간 부담스럽다는 응답 또한 46.5%로, 75% 이상이 주거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세 거주자 비율이 높은 방문취업자와 재외동포의 경우 85% 이상이 주거비 지출의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특히 비전문취업 이주노동자의 경우 무상으로 제공되는 소위 기숙사의 형태가 주거의 취약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회사 안에 위치한 숙소는 흔히 상상하는 기숙사의 형태가 아닌 경우가 더 많으며, 가건물이나 작업장 부속 공간이 주거용 독립 건물보다 많은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이주와 인권연구소, 2019, p. 36). 전체 조사 대상자를 기준으로 현재 거주하는 집의 형태의 비율을 보면 연립,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형태가 26.2%로 가장 많았

그림 2. 이주노동자의 주거비 부담자 및 주거비 지출의 경제적 부담 정도

(단위: %)



자료: 김기태 외. (2020).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이주노동자 연구. pp. 323-324. [그림 7-4-14], [그림 7-4-15]를 이용하여 재구성.

으며, 다음으로 단독주택(21.2%), 비거주용 건물 내 공간(9.8%), 지하, 반지하방(9.6%) 순으로 나타났다. 회사(고용주)의 부담 비율이 높았던 비전문취업 이주노동자의 경우 비거주용 건물 내 공간이 19.5%로 가장 많았으며, 가건물, 무허가 불량주택, 비정형 주거 형태인 컨테이너를 모두 포함하면 열악한 주거 형태의 비율이 40.5%에 달한다.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한 한국복지패널 조

사 결과에 따르면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비닐하우스 등 비정형 거주지, 가건물(컨테이너 등)의 주거유형은 0.72%(여유진 외, 2019)로 1%도 채 되지 않는다. 이를 비교하면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피스텔, 아파트의 형태도 11% 정도 차지하지만 혼자 이용하기보다는 직원 여러 명이 공동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월세 점유 형태가 많았던

표 1. 이주노동자가 현재 거주하는 집의 형태

(단위: %)

집의 형태	전 체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	방문취업자(H2)/재외동포(F4)
비거주용 건물 내 공간	9.8	19.5	0.7
임시적인 가건물	2.7	5.5	0.1
무허가 불량주택	2.0	3.9	0.1
컨테이너	5.7	11.6	0.1
지하, 반지하방	9.6	1.7	17.0
옥탑방	3.4	2.3	4.4
단독주택	21.2	13.3	28.7
연립, 다세대, 다가구주택	26.2	11.8	39.7
오피스텔	2.6	2.9	2.3
아파트	8.3	13.4	3.4
고시원	1.8	3.0	0.5
기타	6.8	11.0	2.9

자료: 김기태 외. (2020).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이주노동자 연구. p. 325. &lt;표 7-4-2&gt;.

표 2. 이주노동자가 현재 거주하는 집의 형태

(단위: %, 점)

전체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모름/무응답	평균점수
1) 집의 구조물(건고함, 균열 상태)	2.7	13.2	45.8	27.4	10.4	0.4	3.30
2) 냉난방 및 온수 사용	2.5	12.4	40.7	29.2	14.8	0.4	3.41
3) 화재, 재난, 재해 등 안전성	2.7	11.4	43.7	30.1	11.7	0.5	3.37
4) 외부의 침입으로부터의 안전성	2.2	12.1	43.1	29.6	12.4	0.5	3.38
5) 집의 전체적인 상태	2.0	11.6	46.5	29.6	9.9	0.4	3.34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							
1) 집의 구조물(건고함, 균열 상태)	4.3	6.9	44.8	26.2	16.9	0.9	3.45
2) 냉난방 및 온수 사용	3.9	7.4	39.3	27.9	20.8	0.7	3.55
3) 화재, 재난, 재해 등 안전성	3.9	6.6	42.5	27.9	18.1	1.0	3.50
4) 외부의 침입으로부터의 안전성	3.6	6.5	42.8	25.4	20.7	1.0	3.54
5) 집의 전체적인 상태	3.3	7.2	45.5	26.4	16.6	0.9	3.46
방문취업자(H2)/재외동포(F4)							
1) 집의 구조물(건고함, 균열 상태)	1.2	19.0	46.8	28.6	4.4	0.0	3.16
2) 냉난방 및 온수 사용	1.2	17.1	42.0	30.5	9.1	0.0	3.29
3) 화재, 재난, 재해 등 안전성	1.5	15.8	44.9	32.1	5.7	0.0	3.25
4) 외부의 침입으로부터의 안전성	1.0	17.4	43.4	33.6	4.6	0.0	3.24
5) 집의 전체적인 상태	0.7	15.6	47.5	32.7	3.5	0.0	3.23

자료: 김기태 외. (2020).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이주노동자 연구. p. 326. &lt;표 7-4-3&gt;.

방문취업자와 재외동포의 경우 연립, 다세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의 형태에 거주하는 비율이 약 70%로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15% 정도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자격에 따라 주거 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보이며, 오히려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다가구주택 주거유형이 많았던 방문취업자와 재외동포의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앞의 주거비 지출의 경제적 부담 분석 결과로 미

루어 볼 때, 이들은 월세액이 낮은 집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으며, 월세가격이 낮으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일 것이다. 집의 견고함, 균열 상태에 대한 불만족이 20% 정도로 가장 높았으며, 외부 침입으로부터의 안전성에 대한 불만족도 18.4%로, 건물 상태뿐만 아니라 범죄에 노출되는 등 주거 안정성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집 주변의 위생 상태와 치

표 3.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만족도

(단위: %)

전체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모름/무응답	평균점수
병원, 의료복지시설 등 접근 이용성	1.4	6.5	45.9	32.9	12.7	0.6	3.49
교육환경	1.1	6.2	56.3	25.0	10.4	1.0	3.38
치안 및 범죄 등 방범 상태	0.7	<b>7.2</b>	45.8	32.4	12.9	0.9	3.50
집 주변의 위생 상태	1.5	<b>9.5</b>	46.3	30.8	11.1	0.8	3.41
이웃과의 관계	1.3	6.6	54.4	28.6	8.3	0.8	3.36
전반적인 주거환경	1.1	5.6	49.8	33.3	9.4	0.8	3.45
<b>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b>							
병원, 의료복지시설 등 접근 이용성	<b>2.6</b>	<b>7.2</b>	45.5	24.9	18.6	1.2	3.50
교육환경	<b>1.9</b>	<b>8.2</b>	52.6	18.6	16.6	2.0	3.41
치안 및 범죄 등 방범 상태	1.2	5.1	46.1	25.7	20.1	1.9	3.60
집 주변의 위생 상태	2.2	5.9	45.2	27.5	17.6	1.6	3.53
이웃과의 관계	2.3	5.2	55.6	21.8	13.3	1.7	3.39
전반적인 주거환경	1.9	5.5	48.1	27.0	15.9	1.6	3.50
<b>방문취업자(H2)/재외동포(F4)</b>							
병원, 의료복지시설 등 접근 이용성	0.3	5.9	46.3	40.5	7.1	0.0	3.48
교육환경	0.4	4.2	59.9	31.0	4.5	0.0	3.35
치안 및 범죄 등 방범 상태	<b>0.3</b>	<b>9.3</b>	45.6	38.8	6.1	0.0	3.41
집 주변의 위생 상태	<b>0.8</b>	<b>12.9</b>	47.3	33.9	5.0	0.0	3.29
이웃과의 관계	<b>0.3</b>	<b>7.9</b>	53.3	35.0	3.5	0.0	3.34
전반적인 주거환경	0.4	5.7	51.4	39.2	3.3	0.0	3.39

자료: 김기태 외. (2020).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이주노동자 연구. p. 328. <표 7-4-4>.

안 및 범죄 등 방법 상태에 대한 불만족이 다른 항목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방문취업자 및 중국 출신 재외동포의 경우 집 주변의 위생 상태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3.7%였으며, 치안 및 범죄 등 방법 상태에 대한 불만족 비율도 10% 가까이 나타났다. 반면, 비전문취업자의 경우 병원, 의료복지시설 등의 접근 이용성과 아동을 위한 시설, 서비스 및 학교 등 교육 환경 부재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높았다. 이는 거주지가 회사 혹은 공장 내에 있을 가능성이 크며,<sup>2)</sup> 이러한 경우 외곽지역에 공단이 조성되어 있어 생활에 필요한 시설과 접근성이 좋지 않은 환경일 확률이 높다.

### 3. 일상생활 및 경험

다음에서는 주거환경 이외에 이주노동자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인 인력상담센터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이주노동자 관련 상담 가운데 10건 중 3건은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상담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능력은 이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즉, 의사소통은 직업, 직장에서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한 요소로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해 직장 내 혹은 지역사회 내 등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일

상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어 구사 능력에 따라 한국 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습득하는 수준이 달라지므로 의사소통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이들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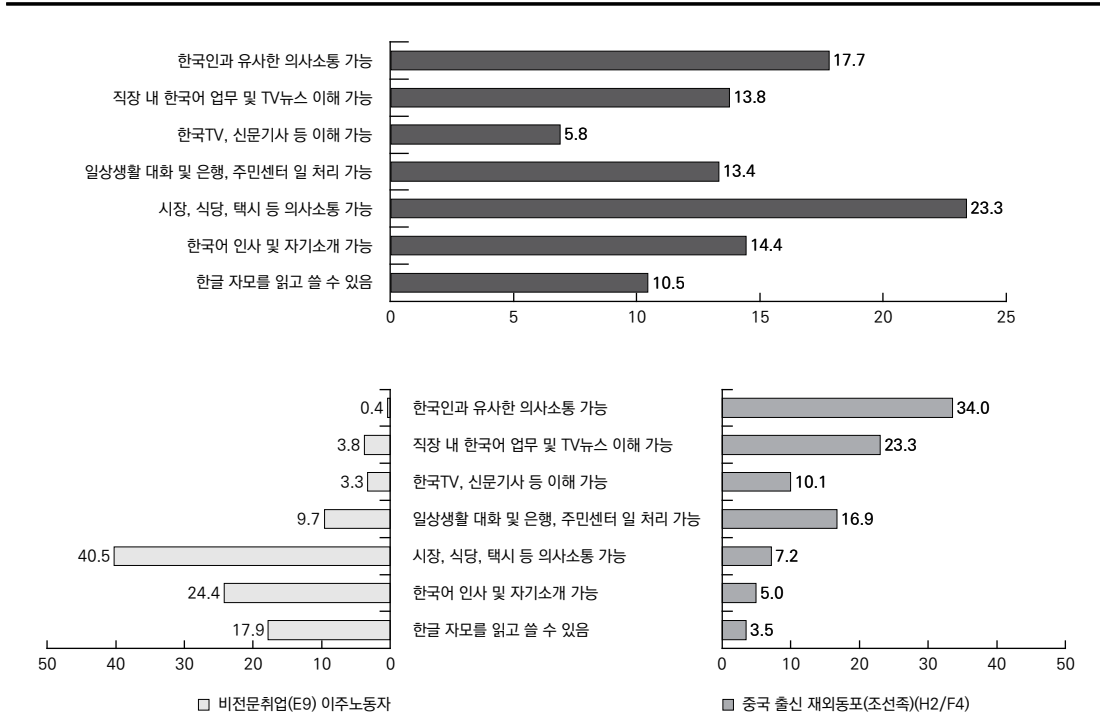
이주노동자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인과 유사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비율이 17.7%, 직장 내 한국어 업무 및 TV 뉴스 등의 이해가 가능한 수준이 13.8%로 30% 정도는 수준급의 한국어 실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TV, 신문기사 등의 이해가 가능한 수준이 6.8%, 일상생활 대화 및 은행, 주민센터의 일 처리가 가능하다는 비율도 13.4%로 이주노동자 절반은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수준의 한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반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수준 혹은 한국어로 인사, 자기소개 정도만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25% 정도로 이주노동자 4명 중 1명은 간단한 정도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어 구사 능력은 체류자격별로 비교해 보면 차이를 보인다. 방문취업자(H2)와 재외동포(F4)의 한국어 실력은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로 들어온 이주노동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앞서 언급하였던 수준급의 한국어 실력(한국인과 유사한 의사소통이 가능, 직장 내 한국어 업무 및 TV 뉴스 등의 이해가 가능한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방문취업자(H2)와 재

2) 실제로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의 82.5%는 광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음(통계청, 법무부, 2017. 12. 20.).



그림 3.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구사 능력(의사소통 수준)

(단위: %)



자료: 김기태 외. (2020).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이주노동자 연구. p. 311. [그림 7-4-1], p. 312. [그림 7-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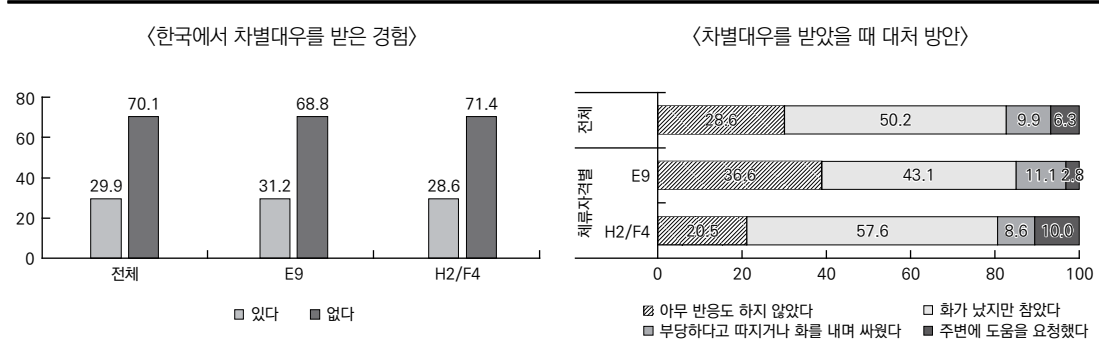
외동포(F4)의 비율은 57.3%인 반면,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로 들어온 이주노동자의 경우 4.2% 수준에 불과하다. 일상생활에 문제없는 수준의 한국어 실력이라고 응답한 비율까지 보더라도 20%가 되지 않는다. 체류자격에 따라 의사소통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다음은 한국 생활에서의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이다. 한국에서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이주노동자 중 30%가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비율은 체류자격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와 방문취업자(H2) 및 재외동포(F4) 3명 중 한 명은 차별대우를 경험한 것이다.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와 함께 수행된 ‘외국인근로자의 사회권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조사’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우호적인 정도를 설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에 대해 비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2.9%, 중국 출신 재외동포(H2/F4)에 대해서는 71.2%가 비우호적이라고 응답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중국 출신 재외동포에 대한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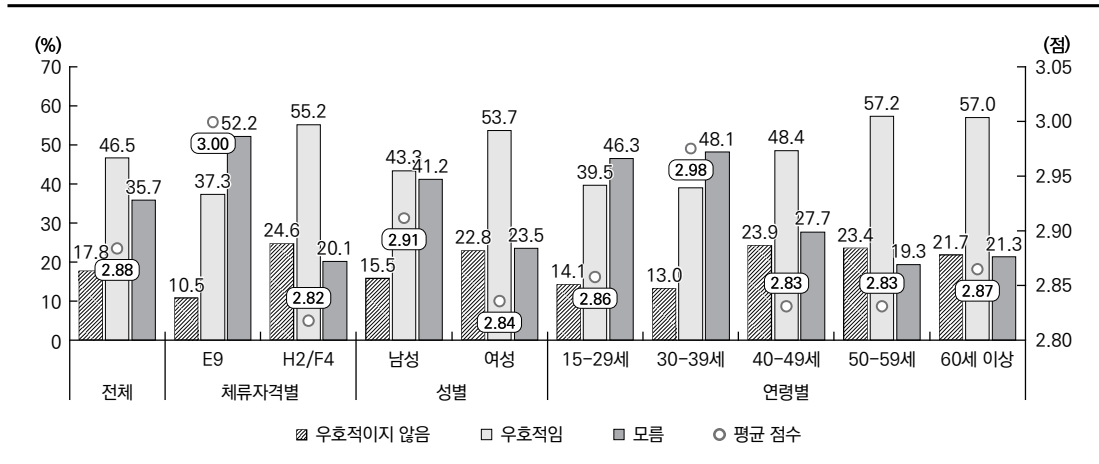
그림 4. 한국에서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 및 차별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안

(단위: %)



자료: 김기태 외. (2020).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이주노동자 연구. p. 314. [그림 7-4-3], p. 315. [그림 7-4-5].

그림 5. (이주노동자가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중국동포에 대한 태도



주: 평균은 4점 척도(① 전혀 우호적이지 않음, ② 별로 우호적이지 않음, ③ 약간 우호적, ④ 매우 우호적)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호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자료: 김기태 외. (2020).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이주노동자 연구. p. 317. [그림 7-4-7].

정적 인식은 일견 새로운 것 같지만, 이는 이들의 수가 늘어나는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지적 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김기태 외, 2020, pp. 210-212). 온라인 매체와 소셜 미디어 보도 내용 등에 부정적 내용들이 다수이고 이를 통해 비

우호적인 태도가 이주노동자 당사자들에게 전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들은 차별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식으로 아무 반응을 하지 않거나 화가 났지만 참았다는 응답이 80% 가까이로 나타났다. 그 비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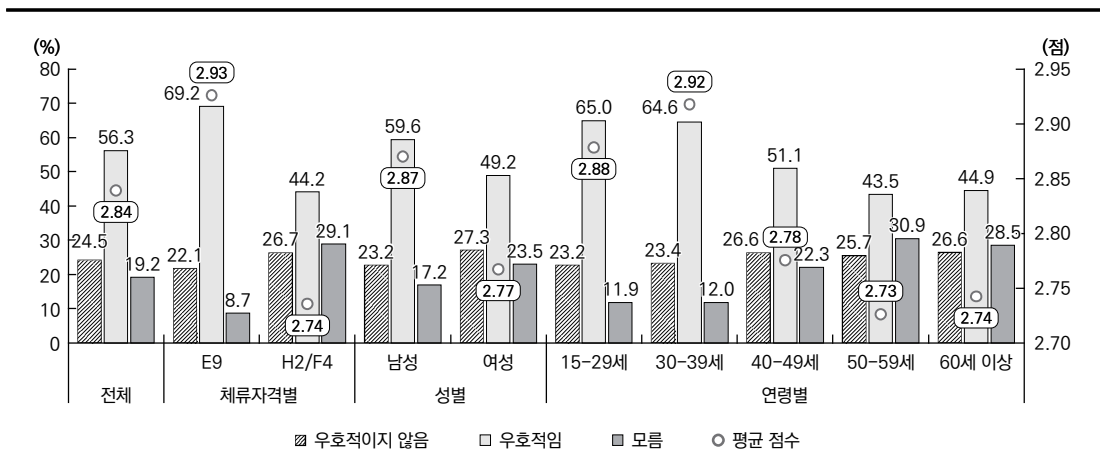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가 방문취업자(H2)와 재외동포(F4)보다 높았으며, 한국어 구사 능력에 대한 결과와 비교 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은 이주노동자가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중국동포 혹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태도에 대해 질문한 것이다. 먼저 중국동포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이주노동자 전체 기준 46.5%가 한국인이 중국동포에 대해 ‘우호적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17.8%는 ‘비우호적이다’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당사자인 방문취업자(H2)와 재외동포(F4)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들이 중국동포에 대해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5.2%로 절반 정도는 우호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비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 또한 24.6%로 높게 나타났다. 특성별로 살펴보

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한국인들의 중국동포에 대한 태도가 비우호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보인다.

중국동포를 제외한 비전문 취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이주노동자가 인식하는 한국인의 태도에 대해 설문한 결과, 앞서 살펴본 ‘중국동포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에 비해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줄어들고, ‘비우호적이다’와 ‘우호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높아졌다. 중국동포에 대한 인식에서 모르겠다는 의견이 35% 정도로 높게 나온 것과 대조적인 결과였다.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전반적인 태도에 대해 조사 대상자 절반 이상이 우호적이라고 응답하였지만, 비우호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 또한 24.5%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여성 외국인근로자보다 한국인들의 태

그림 6. (이주노동자가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태도



주: 평균은 4점 척도(① 전혀 우호적이지 않음, ② 별로 우호적이지 않음, ③ 약간 우호적, ④ 매우 우호적)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호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자료: 김기태 외. (2020).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이주노동자 연구. p. 318. [그림 7-4-8].

도가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에 대해 우호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60%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한국인의 태도가 우호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나가며

이 글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일상생활과 주거권 보장 실태를 살펴보았다. 먼저 주거 관련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비전문취업 이주노동자의 47%가 15~29세 연령층으로 이들은 직장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방문취업자 및 재외동포에 몰려 있는 4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월세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체류자격 및 연령대에 따라 집의 점유 형태는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회사 기숙사의 주거환경 문제의 심각성이다. 본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 혹은 신문기사에서도 접할 수 있듯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형태의 주거공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회사(고용주) 부담 비율이 높았던 비전문취업 이주노동자의 경우 비거주용 건물 내 공간이 19.5%로 가장 많았으며, 가건물, 무허가 불량주택, 비정형 주거 형태인 컨테이너를 모두 포함하면 열악한 주거 형태의 비율이 40.5%에 달한다. 또한 주거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정도는 전체 외국인근로자의 75% 이상이 주거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세 거주자 비율이 높은 방문취업자와 재외동포의 경우 85% 이상이 주거비 지출의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거주지의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서도 모든 문항에서 15% 정도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자격에 따라 주거 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보이며, 오히려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다가구주택 주거유형이 많았던 방문취업자와 재외동포의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주거비 지출의 경제적 부담 분석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월세액이 낮은 집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낮은 월세가격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취약한 건물 상태뿐만 아니라 범죄에 노출 등이 우려되는 등 주거 안정성에도 침해를 받고 있다. 주거환경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집 주변의 위생 상태와 치안 및 범죄 등 방범 상태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비전문취업 이주노동자의 경우 병원, 의료복지시설 등 접근 이용성과 아동을 위한 시설, 서비스 및 학교 등 교육환경 부재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비전문취업 이주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 특성에 따라 거주지가 회사 혹은 공장 내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경우 도시 외곽지역에 공단이 조성되어 있어 생활에 필요한 시설과 접근성이 좋지 않은 환경일 확률이 높다.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 실태를 살펴본 결과 외국인근로자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30% 정도는 한국인과 비슷한 수준의 대화가 가능하고 일 처리 등을 한국어로 할 수 있는 수준급의 한국어 실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류자격별로 한국어 구사 능력을 비교해 보면 비전문취업 이주노동자로 들어온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 구사 능력은 방문취업자와 재외동포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차별대우를 받았을 때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연결될 수 있다. 한국인의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인 인식은 그 정도는 다르지만 당사자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는 온라인 매체와 소셜 미디어 등에서 전달되는 부정적 내용들이 한국인의 인식으로 전달되고, 이러한 한국인의 비우호적인 태도가 이주노동자 당사자들에게 전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사회통합과 사회연대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 지침'을 통해서, 사용자가 이주노동자의 월 숙식비로 월 통상 임금에서 최대 20%까지 사전에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용노동부, 2017. 2. 6.). 물론, 이주노동자의 서면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이주노동자로서는 사용자와의 '갑을 관계'에서 이를 마다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이주노동자들이 묵는 기숙사 가운데 40% 이상이 매우 열악한 주거 형태인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이와 같은 선공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도 있

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서면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지침의 부당성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숙식비 징수 지침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주거 조건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도 아니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숙소 상태의 열악함은 여전하다. 더욱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에는 이렇처럼 취약한 집단의 경우 더욱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불편한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그들의 노동 여부가 고용주의 재량에 붙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 의사는 받아들일 여지가 더욱 적어지며, 인권은 더욱 궁지로 몰릴 수 있다. 따라서 먼저 한국어 구사 능력이 다소 저조한 비전문취업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한국 생활 적응기에는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교육이 회사에서 혹은 외국인 인력상담센터에서 활성화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적인 언론매체 등 단편적인 시각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인식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꼭 필요하지만 대부분이 기피하는 제조업 혹은 농산어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이주노동자들이 대체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고용허가제가 오히려 이주노동자에게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빼앗게 되는 부작용, 혹은 최저임금 인상의 이유로 부당한 숙식비 공제 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다. 제도의 본 취

지에 맞는 적용을 위해 면밀한 실태 파악과 제도의 재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합동으로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1. 3. 3.). 본 내용에는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1년 1월부터 농축산·어업 사업장의 경우 가설 건축물 등 불법 가설 건축물에 대한 고용 허가를 불허하는 것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이행 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이 이행 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 취소 등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직장에서 제공 하는 기숙사에 대한 점검과 최소한의 수준은 보장될 수 있는 규제와 제재가 잘 적용되어 관련 제도가 이로운 쪽으로 개선되길 기대해 본다. 한국의 복지는 현재 ‘인권’보다는 ‘시민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에 일정 부분 배제되어 있다. 한국 경제의 필요로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인 만큼 이들에 대한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인 주거권이라도 먼저 포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안전망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2021. 3. 3.).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 보도자료.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992](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992)에서 2020. 3. 3. 인출.
- 고용노동부. (2017. 2. 6.).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 지침. [http://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200200797](http://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200200797)에서 2020. 11. 30. 인출.
- 김기태, 곽윤경, 이주미, 주유선, 정기선, 김석호, ..., 김보미. (2020).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이주노동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오미애, 이병재, 최준영, 이주미, 김근혜, ..., 김정욱. (2019). 201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01.
- 윤성효. (2017. 12. 17.). 컨테이너 숙소 화재, 이주노동자 참사 막으려면?.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86577](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86577)에서 2020. 11. 19. 인출.
- 윤지원. (2020. 12. 23.). ‘한파경보에 난방 고장’ 비닐하우스 숙소서 이주노동자 숨져.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22310590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2231059001)에서 2021. 3. 31. 인출.
- 이주와 인권연구소. (2019). 최저보다 낮은: 2018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주거환경 실태조사. 부산: 이주와 인권연구소. p. 36.

- 임동우, 김민정. (2020. 9. 22.). 코로나에 벼랑 끝 이주민 <1> 열악한 주거 실태.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20/11/19/newsbody.asp?code=0300&key=20200903.33003000873>에서 2020. 11. 19. 인출.
- 참여연대. (2018). [논평] UN주거권특보,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심각한 우려 표해.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565915>에서 2020. 11. 19. 인출.
- 통계청, 법무부. (2017. 12. 20.).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보도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65286](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65286)에서 2020. 11. 1. 인출.

---

# The Housing and Living Conditions of Immigrant Worker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Lee Jumi**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is paper discusses the right of housing and living conditions of Immigrant Workers. Non-professional (low-skilled) immigrant workers (E9) live in dormitories provided by their employers. Our survey results found 40.5% of these dwellings were low-quality housing, including non-residential spaces, temporary buildings, unauthorized houses, and containers. Also, much of the housing occupied by workers on a work-visit visa (H2) and overseas Koreans from China (F4), who usually are short on budget, were of low quality. Non-professional immigrant workers (E9) showed a much lower level of Korean proficiency than workers on a work-visit visa (H2) and overseas Koreans from China (F4). So, They often have to remain passive even if they are treated unfairly due to their low language proficiency. Furthermore, they had to face the unfriendly attitude of Koreans. Koreans' perceptions of immigrant workers are built mostly on piecemeal information coming from negative media coverage of immigrant workers in Korea. Such perceptions should change, and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housing environment (or conditions) of immigrant workers. Regulations need to be put in place to ensure that the quality of housing provided by employers of migrant workers does not fall below minimum standards.